|  |  |  |
| --- | --- | --- |
| **판결·재정(裁定) 집행거부 형사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석[2015]16호  <판결·재정(裁定) 집행거부 형사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2015년7월 6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57차 회의에서 통과 되여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5년 7월 20일  판결·재정(裁定) 집행거부 범죄를 법에 따라 징계 및 단속하고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재정(裁定)이 법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재정(裁定) 집행거부 형사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제1조** 피집행인, 집행협조 의무자, 담보인 등 집행 의무가 있는 자가 인민법원의 판결·재정(裁定)을 집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거부하고 그 정황이 심각한 경우 형법 제313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재정(裁定) 집행 거부죄로 처벌한다.  **제2조** 집행 의무가 있는 자가 집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형법 제313조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에 규정한 '집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거부하고 그 정황이 심각한 기타의 경우'로 인정해야 한다.  (1) 재산상황 보고 거부 또는 허위보고, 인민법원의 과소비 및 관련 소비 제한령 위반 등 집행거부 행위를 행하였고 과태료 또는 구류(拘留) 등 강제조치를 취한 후에도 여전히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2) 피집행인의 이행능력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폭력, 협박, 뇌물지급 등 수단으로 타인이 증인으로 나서는 것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지시, 뇌물지급, 협박하거나 인민법원이 피집행인의 재산산황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판결·재정(裁定)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법률문서에서 인도를 명한 재물·구매증빙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주택·토지에서의 퇴출을 거부함으로써 판결·재정(裁定)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타인과 결탁하여 허위소송, 허위중재, 허위화해 등 방식으로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판결·재정(裁定)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폭력, 협박의 수단으로 집행인이 집행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단적으로 소란으로 피우거나 집행현장을 공격함으로써 집행업무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집행인원을 모욕, 공격, 억류, 구타함으로써 집행업무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7) 집행사건서류, 집행공무차량 및 기타 집행기계, 집행인원의 복장 및 집행공무증을 훼손, 강탈함으로써 집행업무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판결·재정(裁定)의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제3조** 집행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모두 해당됨을 증명하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고 인민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함됨을 인정하는 경우 자소(自訴)사건으로 입건하여 심리한다.  (1) 집행 의무가 있는 자가 판결·재정(裁定)의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집행신청인의 인신·재산권리가 침해당하여 법에 따라 그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고'  (2) 집행신청인이 고소한 바 있으나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이 집행 의무가 있는 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이 해석 제3조에 규정한 자소(自訴)사건의 자소인(自訴人)은 형사소송법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화해 하거나 자소(自訴)를 취하할 수 있다.  **제5조** 판결·재정(裁定) 집행거부 형사사건은 집행법원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판결·재정(裁定)의 집행을 거부한 피고인이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집행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 그 정황을 참작하여 관대하게 처벌할 수 있다.  **제7조** 부양비·양육비, 위로금, 의료비, 근로보수 지급 판결·재정(裁定)의 집행을 거부한 경우 그 정황을 참작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제8조** 이 해석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해석에 앞서 공표된 사법해석과 규범성문건이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 |  | **最高人民法院**  **关于审理拒不执行判决、裁定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法释〔2015〕16号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拒不执行判决、裁定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已于2015年7月6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657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7月22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15年7月20日  为依法惩治拒不执行判决、裁定犯罪，确保人民法院判决、裁定依法执行，切实维护当事人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刑法》《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等法律规定，就审理拒不执行判决、裁定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解释如下：  **第一条** 被执行人、协助执行义务人、担保人等负有执行义务的人对人民法院的判决、裁定有能力执行而拒不执行，情节严重的，应当依照刑法第三百一十三条的规定，以拒不执行判决、裁定罪处罚。  **第二条** 负有执行义务的人有能力执行而实施下列行为之一的，应当认定为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刑法第三百一十三条的解释中规定的“其他有能力执行而拒不执行，情节严重的情形”：  （一）具有拒绝报告或者虚假报告财产情况、违反人民法院限制高消费及有关消费令等拒不执行行为，经采取罚款或者拘留等强制措施后仍拒不执行的；  （二）伪造、毁灭有关被执行人履行能力的重要证据，以暴力、威胁、贿买方法阻止他人作证或者指使、贿买、胁迫他人作伪证，妨碍人民法院查明被执行人财产情况，致使判决、裁定无法执行的；  （三）拒不交付法律文书指定交付的财物、票证或者拒不迁出房屋、退出土地，致使判决、裁定无法执行的；  （四）与他人串通，通过虚假诉讼、虚假仲裁、虚假和解等方式妨害执行，致使判决、裁定无法执行的；  （五）以暴力、威胁方法阻碍执行人员进入执行现场或者聚众哄闹、冲击执行现场，致使执行工作无法进行的；  （六）对执行人员进行侮辱、围攻、扣押、殴打，致使执行工作无法进行的；  （七）毁损、抢夺执行案件材料、执行公务车辆和其他执行器械、执行人员服装以及执行公务证件，致使执行工作无法进行的；  （八）拒不执行法院判决、裁定，致使债权人遭受重大损失的。  **第三条** 申请执行人有证据证明同时具有下列情形，人民法院认为符合刑事诉讼法第二百零四条第三项规定的，以自诉案件立案审理：  （一）负有执行义务的人拒不执行判决、裁定，侵犯了申请执行人的人身、财产权利，应当依法追究刑事责任的；  （二）申请执行人曾经提出控告，而公安机关或者人民检察院对负有执行义务的人不予追究刑事责任的。  **第四条** 本解释第三条规定的自诉案件，依照刑事诉讼法第二百零六条的规定， 自诉人在宣告判决前，可以同被告人自行和解或者撤回自诉。  **第五条** 拒不执行判决、裁定刑事案件，一般由执行法院所在地人民法院管辖。  **第六条** 拒不执行判决、裁定的被告人在一审宣告判决前，履行全部或部分执行义务的，可以酌情从宽处罚。  **第七条** 拒不执行支付赡养费、扶养费、抚育费、抚恤金、医疗费用、劳动报酬等判决、裁定的，可以酌情从重处罚。  **第八条** 本解释自发布之日起施行。此前发布的司法解释和规范性文件与本解释不一致的，以本解释为准。 |